

광명 퍼스트 스위첸 인지세 납부 안내

□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(지산, 기숙사, 상업시설)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- ▶ **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** *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 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 - 납부기한 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 변경 횟수와 상관없이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- ▶ **전자수입인지 구입처**
 - 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- ▶ **가산세 개정사항(21.1.1.부터 적용)** *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 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 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 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□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 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 : **인지세 납부**
- ② 과세문서 종류 : **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**
- ③ 금액 : **150,000원**
- ④ 건수 : **1건**
- ⑤ 확인 및 결제

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재발행 불가)



광명 퍼스트 스위첸

인지세 납부 안내 (기계약자)

□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(지산, 기숙사, 상업시설)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▶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.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 변경 횟수와 상관없이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▶ 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※ 기계약자분들은 전자수입인지대신 수입인지를 우체국등에서 현물로 구매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
(수입인지 및 영수증 함께 보관)

※ 수입인지 품질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 문의

▶ 가산세 개정사항(21.1.1.부터 적용) *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※ 가산세 개정이후 다수의 부동산 계약자들의 혼선이 발생함.

이에 부동산서비스협회등이 정부(국세청)와 협의하여 기 계약자의 경우 일정기간내 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됨.

광명 퍼스트 스위첸 인지세 납부 약속서

오피스텔명	광명 퍼스트 스위첸	담당자	
타입	<input type="checkbox"/> A1 <input type="checkbox"/> A2 <input type="checkbox"/> A3 <input type="checkbox"/> A4 <input type="checkbox"/> A5 <input type="checkbox"/> A6 <input type="checkbox"/> A7 <input type="checkbox"/> B1 <input type="checkbox"/> B2 <input type="checkbox"/> B3 <input type="checkbox"/> C1 <input type="checkbox"/> C2	호실	호
성명 (사업자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가산세 개정사항 (21.01.01. 부터 적용)	※ 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 •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 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 •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		
인지세 납부기한	※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•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• 납부기한·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 변경 횟수와 상관없이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		
수입인지 구입처	• 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		
구 매	• 용도 : 인지세 납부 •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• 금액 : 150,000원 • 건수 : 1건		

상기 본인은 "광명 퍼스트 스위첸" 계약함에 인지세법 관련 사항을 숙지 하였으며, 인지세 납부기한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납부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2 년 월 일

계약자 : (인)

대리인 : (인)